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2. 28(수) / 총 5매(본문 3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한성수, 서기관 박진홍, 사무관 김성환 • ☎ (044) 201-3691, 3689
	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		• 과장 권병철, 사무관 최용균, 주무관 박기병 • ☎ (044) 415-1123, 1122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본회의 통과

- 임직원 채용, 자본금 출자 등 설립절차 거쳐 하반기 출범 -
- 매립사업 및 부대사업 추진, 공공주도로 새만금 본격 개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새만금특별법)」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대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.
 - 작년 11월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(더불어민주당, 시흥을)이 대표발의 하였으며,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염원하는 전북 지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.
-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(52km²), 관광레저용지(36.8km², 既매립지 3km² 제외), 배후도시용지(10km²)를 단계적으로 매립·조성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.

- 또한, 새만금사업의 **재원 마련**을 위해 관광사업, 재생에너지사업 등 **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**할 계획이다.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**재투자**한다는 계획으로,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**안정적으로 추진**할 수 있을 것이다.

□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·조성 사업을 공공이 **선도적으로 시행**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- 그 동안 대규모 매립사업(전체규모 : 291km², 여의도 면적의 100배)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**현실적으로 어렵다**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, 이를 반영하여 공공이 **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**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되었다.

-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며,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, 각종 인허가, 홍보,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**전담기관 역할**을 한다.

□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**법정 자본금**은 3조원으로, 정부 등의 현금출자, 현물출자(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)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**마련**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**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***할 예정이다.

- 특히, 민관 합동으로 「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(위원장:국토부 제1차관)」를 운영하여 정관 제정, 임직원 채용,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**출범**할 예정이다.

*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- 향후,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지역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가 완성되었고, 이제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”며 “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되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북합도시정책과 김성환 사무관(☎ 044-201-36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새만금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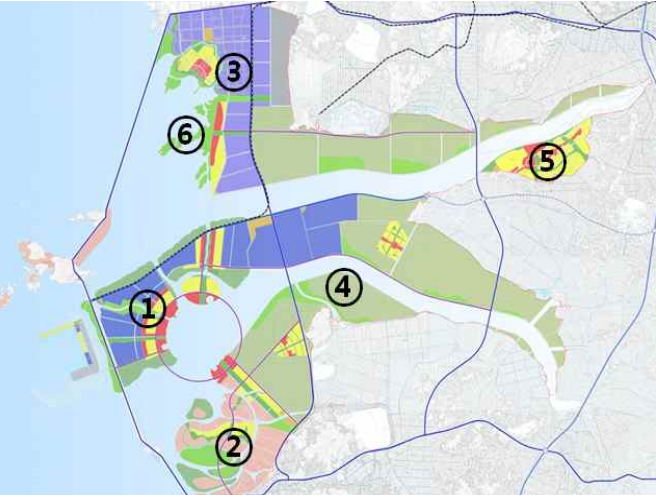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(면적/사업비) 409km²(매립 291km², 담수호 118km²) / 22.2조 원(MP('11) 기준)

* 방조제 33.9km(세계 최장, '10.4 준공)

- 용도별 용지현황

< 6대 용지별 사업시행자 >

용지명	추진면적/ 총면적(km ²)	사업시행자	
①국제협력	-/52.0	미 정	
②관광레저	1.1*/36.8	미 정	
③산업연구	18.5/41.7	농어촌공사	
④농생명	94.3/94.3	농식품부	
⑤배후도시	0/10.0	미 정	
⑥환경생태	0.8**/42.0	새만금환경청	* 관광레저 일부(1.1km ²) 개발계획 수립중(전북개발공사) ** 환경생태 1단계사업(0.81km ²) 실시계획 수립중

- (추진현황) 새만금청 주도로 투자유치,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중이나, 매립사업자 참여저조 등으로 용지조성 지연 및 기업유치 부진

□ 주요 추진경위

- '87년 대선공약 발표, '91.10월, 매립면허 발급
- '07.4월, 내부개발 기본구상 변경(농지 100% → 농지 72%/복합 28%)
- '08.10월, 내부개발 기본구상 변경(농지 30%/복합 70%)
- '11.3월, 새만금 종합개발계획(MP) 확정(제6차 새만금위원회)
- '12.12월,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」 제정('13.9. 시행, 국토부)
- '13.9월, 새만금개발청 개청

- ☐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
- ☐ 투자개발사업 규모, 현물출자(매립면허권) 가액 등을 감안하여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출자 가능
- ☐ 자본금 확보를 위해 매립면허권 현물출자 근거를 마련하고, 실시 계획승인 이전에 매립면허권 출자가 가능토록 규정
- ☐ 농지기금 회수방안으로 현물출자 재산을 20년 이내에 농지기금에 납입
 -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
- ☐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도시의 개발,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설치·운영·관리 등을 명시
- ☐ 공사채 발행 상한을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로 규정
- ☐ 정관 제정·변경, 공사채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, 연도별 사업계획, 실적 및 결산 등 사업 전반은 새만금청이 담당
- ☐ 「외국인토지법」이 폐지되고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